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47호(號) 1928(昭和 2)년 6월 26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47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313호(號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, 길장철로관리국 소관철도(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) 화물연락운송규칙(貨物連絡運送規則) 중(中) 1928(昭和 3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6월 26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6조(條)제7호(號) 중(中) 「8척(尺)」을 「14척(尺)」으로, 「1톤(噸·ton)」을 「1미국톤(米噸·ton)」으로, 「5톤(噸·ton)」을 「3미국톤(米噸·ton)」으로, 「4백(百) 입방척(立方尺)」을 「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」으로, 「3톤(噸·ton)」을 「3미국톤(米噸·ton)」, 「33척(尺)」을 「68척(尺)」으로, 「20톤(噸·ton)」을 「30미국톤(米噸·ton)」으로 개정(改正)함.